

【 16 】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출자 : 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발급 또는 열람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뿐 아니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 중 “단서”규정을 삭제
- 나. 동조 제3호에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교부에 관한 항목을 신설(안 제2조)

양주시조례 제 호

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 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다만,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등·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도 할 수 있다.”를 삭제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법 제18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 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교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 <u>다만, 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 <삭제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8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</u></p>

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위임조례개정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주민등록표 등·초본발급 또는 열람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뿐 아니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가. 제2조 중 “단서” 규정을 삭제

나. 동조 제3호에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교부에 관한 항목을 신설(안 제2조)

개정규정안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주민등록법 제18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

제18조 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<개정 2001.1.26>)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7, 1999.5.24, 2004.3.22>

현 해	개 정
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市長·都守 또는 區廳長에게 신청할 수 있다.	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----- -----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)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----- -----

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5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도 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
 2.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- 제3조(지휘·감독)**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개정에 따른 설명자료

□ 개정이유

주민등록표 등·초본발급 또는 열람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뿐 아니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 (주민등록법 제18조의① '04.3.22개정)

현 행	개 정
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勝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신청할 수 있다.	第18條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-- -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이나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-----

□ 개정내용

-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공동으로 관掌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교부에 관한 항목을 신설